



제306회 임시회

2012.01.17.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2년 1월 3일

○ 회부일자 : 2012년 1월 4일

3.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처분재산 현황

(단위 : m<sup>2</sup>,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처 분 시 기	처분 사유	매 도 요구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sup>2</sup> )					
청 풍 초 양평폐교	토지	제천시 청풍면	9,344.0	564,640	2012. 상반기	제천시 청풍지구 황토 체험 등 「청풍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 업을 위해 매도 요구	제 천 시	도면1
	건물	도곡리 132-4	577.0	81,555				
합 계 (2건)			9,921.0	642,195				

①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 처분

○ 폐교일자 : 1995. 3. 1.

○ 재산위치 :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132-4

- 재산현황
  - 토지 : 9,344m<sup>2</sup> (1필지)
  - 건물 : 본관교사 외 5동 / 577m<sup>2</sup>
- 추정금액 : 642,195천원
- 사      유 : 제천시에서 동 폐교를 매입하여 청풍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유치

## 5. 검토의견

### 청풍초등학교 양평 폐교

- 청풍초등학교의 양평 폐교 매각재산은 1953. 5. 25.설립 되어 1995. 3. 1. 폐교되었으며, 토지 9,344m<sup>2</sup>, 건물 577m<sup>2</sup>으로 매각 추정금액은 642,195천원임.
- 동 건물은 폐교 된지 16년이 지났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으며,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청풍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사용으로 환원된다는 집행청의 의견임.
- 제천시는 양평폐교를 매입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재산의 매각은 국가재산의 활용도와 공익성을 높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발 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